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여러 분들께

한국어 (韓國語)

2012 년 7 월 9 일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해 ‘체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외국인등록 제도는 폐지됩니다.)

‘체류 카드’ 교부

- 대상 : ‘3 개월’을 넘는 체류기간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는 분께 교부됩니다.
 - ‘단기체재’ 체류자격, ‘외교’ 또는 ‘공용’ 체류자격을 가지신 분께는 체류 카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특별영주자 분께는 체류 카드가 아닌 ‘특별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 기재내용 : 얼굴 사진 외에 성명,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한, 취로제한의 유무 등의 정보
- 유효기간 :

	16 세 이상	16 세 미만
영주자	교부일로부터 7 년	16 세가 되는 생일
영주자 이외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16 세가 되는 생일 중 더 빠른 쪽

- 교부장소 :
 - 지방 입국관리 관청(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주부 공항 및 간사이 공항에서는 2012년 7월 9일 이후 새로 중·장기 체류자에 해당되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을 때에 교부합니다. 다만, 그 이외의 출입국 항구/공항에서는 입국 후에 시구청촌(市區町村)에 신고한 주소 앞으로 간이등기로 우송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입국관리국, 지국, 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등록 증명서로부터 체류 카드로 바꾸는 시기 :
 - 외국인등록 증명서는 체류 카드가 교부될 때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은, 거주지 신고나 입국관리 관청에서의 절차에서 체류 카드로 간주되기 때문에 체류 카드로 바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서는 체류기간 갱신허가 등을 받았을 때에 새 체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 16 세 이상의 영주자 분은 2015 년 7 월 8 일까지(주), 16 세 미만의 영주자 분은 2015 년 7 월 8 일 또는 16 세 생일 중 더 빠른 날까지 체류 카드로 바꾸셔야 합니다.
- (주) 체류자격 ‘특정활동’에서 ‘4년’ 또는 ‘5년’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체류하는 분도 2015년 7월 8일까지 체류 카드로 바꾸셔야 합니다.
- 편리해지는 점 :
 - 여권과 체류 카드를 소지하고 출국할 때에 1년 이내이며 유효한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경우(주)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재입국허가로 간주’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됩니다. 또 유효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특별영주자 분은 2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민표 작성

체류 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교부대상이 되는 분은 외국인주민으로서 거주하시는 시구청촌에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 기재사항 :
 - 외국인주민 주민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 이외에 외국인주민에게만 있는 사항으로서 국적·지역,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 주민표 사본의 교부 :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시구청촌 관련업무 창구에서 주민표의 사본(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기본대장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주민에 관련된 주민기본대장제도에 관하여’(총무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홈페이지 :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gyousei/c-gyousei/zairyu.html

신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절차 장소
① 새로 주소를 정했을 때, 또는 주소를 변경했을 때 (전입 신고(※1), 전거 신고(※1), 전출 신고(※2)) ※1 체류 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둘 중 하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2 다른 시구청촌으로 주소 변경할 때는 그때까지 살던 시구청촌에서 미리 전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구청촌
② 성명, 국적·지역을 변경했을 때	지방 입국관리 관청
③ 체류 카드를 분실했거나 쓸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을 때	
④ 《영주자, 16 세 미만인 분》 · 체류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⑤ 《취로자격(일부를 제외함), 유학생 및 연수생인 분》 · 고용처와 교육기관 등 소속기관의 명칭변경, 소재지변경, 회사 도산, 고용계약 종료,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 등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신고서를 지방관리 관청에 지참하거나 도쿄 입국관리국에 우송함
⑥ 《배우자로서 ‘가족체재’, ‘특정활동0’, ‘일본인의 배우자 등’ 및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시는 분 · 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외국어 대응 가능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월~금 / 8:30~17:15 TEL 0570-013904(IP 전화, PHS, 해외통화는 03-5796-7112)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 원 스톱 형 종합 상담 지원 센터 월~금 / 9:00~16:00 외국인종합상담지원센터(신주쿠) 03-3202-5535 외국인종합상담 센터 사이타마 048-833-3296 하마마쓰외국인 종합지원 원 스톱 센터 053-458-1510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info/index.html	전화나 방문에 의한 문의에 대해 일본어 뿐만 아니라 아래 외국어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응언어는 요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쿠)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벵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사이타마)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하마마쓰)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법무성 입국관리국(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관하여)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index.html

※ 영어, 중국어(간체자, 번체자),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의 설명서가 있습니다.

번역 협력 : 국립대학법인 도쿄외국어대학교